

1. 개정이유

숙박업 및 목욕장업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04호, 2024년 10월 22일 공포, 2025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수사결과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제2항)
- 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u><신 설></u>	제19조(행정처분기준) ① ----- ----- 제4항-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u>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u> 2. <u>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u> 3. <u>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u>

<신 설>

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